건축위원회운영규정

제정 2007. 3. 1.
개정 2009. 3. 1.
개정 2011.11. 1.
개정 2018.12. 1.
개정 2024. 3. 1.
개정 2024. 5.2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공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・관리하기 위한 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자문에 응한다.

1. 학교 및 그 부설기관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2. 그 밖의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 및 교무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9.3.1.)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간사는 건축팀장으로 한다. (개정 2009.3.1., 2011.11.1.)

③ 간사는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기록・보관한다.

제4조(자문 및 감독) ① 학생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공간의 배치는 교무혁신처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, 산학협력사업에 이용되는 공간의 배치는 기획조정처장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1.11.1., 2024.3.1.)

② 현장감독은 총장이 임명하는 건축팀장으로 하며 팀장은 계약, 대관업무, 내부시설 및 용도검토, 설계 검토, 구조물의 품질검토, 안전관리, 공정관리, 기성관리,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관리・감독한다. (개정 2009.3.1., 2011.11.1.)

③ 환경・산업안전 그 밖의 기술부문은 총장이 공정별 감독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5조(행정 및 보고) ① 건축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는 사무처장이 관장하며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. (개정 2024.5.29.)

담당 → 건축팀장 → 사무처장 → 총장 (개정 2009.3.1., 2011.11.1., 2018.12.1., 2024.5.29.)

② 건축팀장은 교무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정별로 상세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정별 감독에게 위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1.11.1.)

제6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되 공사기간 중 교체 보직된 경우에는 자동승계 되는 것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공사기간까지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